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사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주기 명시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25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3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4
1. 가사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주기 명시 등(안 제21조제1항) ..	4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3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 제1항).

Ⅲ. 검토의견

1. 가사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주기 명시 등(안 제21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실태조사) ① ----- ----- ----- ----- -----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

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가사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정책과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관련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책과 법제에 적시에 반영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목적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부합하므로 법률의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으나, 다만 현재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로 공개가 가능하므로, 별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1) 박귀천,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 ILO 협약 비준 및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토론회 자료집』, 2025.6.16.

문 의 처
02)6788-5535